#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3415호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제 출 자 김 포 시 장

#### 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## 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맞게 기존의 유사·중복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기본원칙, 시장의 책무,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,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, 시설비 등 지원, 재정지원 등, 지도·감독, 우선구매 촉진(안 제6조~제13조)
- 라.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, 홍보 및 포상(안 제14조~제15조)
- 마.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위원장의 직무,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16조~제22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(구 시민협치담당관)이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된 안건과 동명의 조례안으로, 검토 결과 조문 내용 또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됨.
-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, 이와 관련해 향후 민간위탁으로 센터 운영을 전환할 계획인지, 그 취지 및 실익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,

○ 안 부칙 제1조에서 안 제10조의 시행일(2024년 4월 1일)을 별도로 지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